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9. 2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9.14. 김효식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.9.18.
- 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7.9.2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효식 의원

가. 제안이유

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2)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(안 제6조)
- 3)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권고(안 제7조)
- 4)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 조정 및 예방한 입주자등에 대한 포상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「주거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고.
- 안 제5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한 사항을
- 안 제6조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내용 규정하고,
- 안 제9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0조는 층간소음 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한 공동주택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중에 상당부분 층간소음이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.

○ 정부에서도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, 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「주거복지법」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